

“건설공사 수주율 최대 45%로 확대하겠다”

도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5년간 평균수주율 31.2% 그쳐
2021년까지 40~45% 확대

도가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율을 대폭 끌어올려 건설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도는 24일 도청에서 ‘2019년도 상반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건설업체들의 전체 발주금액 대비 수주비중은 2013년(36.6%)부터 2016년(28.9%)까지 줄곧 감소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평균 수주율은 31.2%에 그쳤다. 이에 도는 수주율을 2021년까지 최소 40%에서 최대 45%로 확대해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또 계획안에는 △분할발주제도 적극 활용 △불법·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 우수 시·군 평가 및 포상 △건설신기술 활용 촉

진 등 각종 건설산업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다.

이날 지역 건설업계의 각종 건의 사항도 쏟아졌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등 대규모 공사가 지역 의무 공동도급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도내 노후 상수관 보수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건설 수주 확대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는 이와 관련, “평창올림픽 이후 도내 건설업 수주 규모가 급감했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형식 아닌 현실 건설경제 해법 시급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도 대안 “알맹이없다” 지적
“지역 사업 무도급 등 필요”

강원도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가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만호 경제부지사와 도내 건설기관단체, 유관기관 등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들어 주택건설시장 침체와 대규모 SOC 감소 등 지역 건설업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알맹이없는 대책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와 건설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시스템 운영, 분할발주제도, 건설기술훈련업 제도개선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위원장인 정만호 부지사조차 “물량을 확대하거나 지역입찰 범위를 넓

혀야 하는데, 현실은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안타깝다”고 인정할 정도로 형식적인 대책 반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제한적인 건설시장과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내 건설업계를 배려한 지역의 무도급 확대가 더 절박한 해결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강원 지역 종합 건설업체 계약중 50억원 미만 중 소규모 공사가 전체의 67.5%, 전문 건설업체의 경우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전체 공사의 57.7%를 차지하며 지역 건설업체들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도내에서 발주된 전체 공사 중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율이 최근 5년간 평균 31.2%에 그치며 타시·도 지역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시장을 독식, 소극적인 지역 건설업체 보호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도내 건설업체는 수도권 메이저 건설기업과 경쟁할 경우 입찰 참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제2경춘국도 건설 등 지역내 대규모 사업에 지역의 무도급을 뒤 따르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helpkim@kado.net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열어 대책 논의

강원도는 24일 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강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열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평창올림픽 이후의 건설경기 침체와 관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업체와 지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를 지난 3월에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계획을 보고한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건의되는 사안의 실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하! 그렇구나

간접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Q 당사는 A사와 공사기간을 2013. 4. 1.부터 2015. 3. 31.로 하는 계속비 공사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용지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의 요구에 따라 '간접공사비 관련 추가요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가 A사에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귀사가 A사에 제출한 간접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귀사는 A사에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하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고,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그런데 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금액 조정 청구권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②이 사건의 경우 공사에 필요한 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귀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귀사로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증가하는 간접비를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는 경우 귀사의 계약상 이익이 제한되는 반면, A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그에 상당하는 간접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사가 제출한 각서는 귀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도 2019. 5. 17. 계약상대자의 간접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최종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뤄져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귀사로서는 이를 유념하여 최종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이전에 간접비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A사로부터 간접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도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 고려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건산연 “제도 취지 이해하지만
공정률·현장상황 등 관계없이
획일적 적용은 중소기업에 부담”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 규모만으로 일률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인데, 현장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건설동향 브리핑을 통해 현행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하자를 사전에 방지해 건설·운영 관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이 공정률이나 현장 상황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진법에 따르면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특급(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고급(500억원 이상·3만㎡ 이상) △중급(100억원 이상·5000㎡ 이상) △초급(5억원 이상·600㎡ 이상,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른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은 △특급공사는 특급 1명, 중급 2명 △고급공사는 고급 1명, 중급 2명 △중급공사는 중급 1명, 초급 1명 △초급공사는 초급 1명 등이다. 여기에 특급·고급공사는 50㎡ 이상, 중급·초급공사는 20㎡ 이상의 실험실을 보유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체가 공사현장마다 1~2명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품질관리자는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의무적으로 배치해

야 한다.

한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 운용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행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은 착공 초기 준비기간이나 준공 직전 기간에도 품질관리자를 두는 것은 건설현장의 효율적 인력운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건진법 시행규칙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해 품질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유권해석으로 통합 품질관리는 실험실과 시험장비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 품질관리자의 인접현장 통합 배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기준과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공사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공사비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의 공사에는 1명 △공사비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에는 2명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는 공사기간에 따라 1명만 둘 수도 있다.

또한, 동일 사업주가 둘 이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 경계를 기준으로 15km 이내면 1명의 안전관리자가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광복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효율적 운영과 업계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도 안전관리자와 비슷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훈기자 hoony@